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3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5.

발 의 자:정을호·이기헌·김병기

김남근 • 이훈기 • 추미애

백승아 · 조승래 · 김준혁

김동아 · 서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,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(Shrinkflation),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.

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).

법률 제 호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"가격"을 "가격(단위 용량당 가격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고지하여 야 한다. 다만,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및 성분 등이 다시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다.
- 1. 물품등의 포장 등에 표시
- 2.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- 3. 물품등의 판매장소(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포함한다)에 게시

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.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표시의 기준) ① 국가는	제10조(표시의 기준) ①
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	
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	
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	
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	
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	
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	
야 한다.	
1. 상품명 • 용도 • 성분 • 재질 •	1
성능·규격· <u>가격</u> ·용량·허	<u>가격(단위 용량당 가격을</u>
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	<u> 포함한다)</u>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사업자의 책무) ① ~ ③	제19조(사업자의 책무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
	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
	경 전후 사항을 다음 각 호 중
	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</u>
	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3개
	월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. 다

④·⑤ (생 략)

제8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.

<신 설>

<u>1.</u> ~ <u>4.</u> (생 략)

② (생 략)

만,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및 성분 등이 다시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다.

- 1. 물품등의 포장 등에 표시
- 2.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- 3. 물품등의 판매장소(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포함한다)에 게시
- <u>⑤</u>·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
제86조(과태료) ① -----

_

- 1.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 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